



계육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 제도적 보완점

2007년 계육산업은 2006년에 발발한 조류인플루엔자의 영향에서 채 벗어나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으로는 계열화 사업자들의 적자폭이 갈수록 확대되는 등 산업 구조상의 한계가 노출되었고, 밖으로는 한·미 FTA 체결 이후 외국산 닭고기 수입 등과 같은 새로운 시장 상황에 직면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현재까지 계육산업을 규율하는 법령 및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해외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계육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농축산업에 관한 관련 법령 및 법원 판결례의 입장

1) 국내의 경우

국내의 관련 법령 및 법원 판결례는 농축산업의 경우 다른 산업과는 달리 가격이나 물량 결정을 시장 원리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부 또는 관련 단체가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먼저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



강 일 변호사
법무법인(유) 태평양

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시장경제를 경제정책의 수립 및 그 운영의 원칙으로 하면서도, 동조 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절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등을 위한 국가 개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리 헌법은 농수산물 및 축산물 시장에 대하여는 제123조 제1항에서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농·어촌 종합 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의 농수산업자 및 축산업자 보호 및 시장 개입의 책무를 천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 정신에 근거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은 ‘농수산물(농안법 제2조에 의하면 농수산물에는 축산물도 포함됨)의 원활한 유통과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축산법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

계육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점

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농안법 제1조, 축산법 제1조).

먼저 농안법은 농림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주요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농업협동조합 등 조합과 생산자단체 또는 농수산물 수요자와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장려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생산’ 제도를 두고 있고(동법 제6조),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생산자 보호를 위하여 하한가격을 예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하한가격예시’ 제도를 두고 있으며(동법 제8조),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으로 당해 농수산물을 수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과잉생산시 생산자보호’ 제도를 두고 있다(동조 제9조).

또 농안법은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자, 산지유통인, 저장업자, 도·소매업자 및 소비자의 대표가 당해 농수산물의 자율적인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위해 생산조절과 출하조절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협약’ 제도를 두고 있고(동조 제10조 제1항), 농림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패·변질되기 쉬

운 농산물로서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농수산물에 대해 현저한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생산자 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생산조절 또는 출고조절을 하도록 하는 유통조절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조절명령’ 제도를 두고 있다(동조 제10조 제2항).

그리고 농안법은 농수산물 유통시장의 발전과 수급조절, 가격안정을 통해 농가 등 농수산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및 민영 농수산물 도매시장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3장, 제4장 이하 참조), 나아가 농축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5장 이하 참조).

또한 축산법은 농림부 장관에게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위생 등 축산발전에 관해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 시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3조),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발전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5장 이하 참조).

이처럼 헌법, 농안법과 축산법은 농림부 장관 등 정부에게 농수산물 및 축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통해 농수산업자 및 축산업자들을 보호할 책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반적인 공산물이나 서비스 시장에서는 수요·공급의 법칙 등 시장 원리에 의해 정해져야 하는 가격, 생산량 등을 직접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법원의 판결례 역시 농축산업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예외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도매시장법인이 수입 청과물에 대한 위탁상장수수료로 판매대금의 6%를 징수할 것을 결의하고 그 결의에 따라 위탁상장수수료를 징수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규정한 제1조와 공동행위의 인가를 규정한 제19조 제1항 단서(현행 제19조 제2항),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를 규정한 제58조, 농안법의 제규정 등을 근거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행위가 형식적으로 공정거래법의 직접적인 보호법익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행위로 인

해 지켜지는 이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자유 경쟁 경제질서의 유지라는 공정거래법의 직접적인 보호법익을 비교하여 볼 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그와 같은 경쟁제한적 행위가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정거래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실질적으로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행위는 적법한 행위로서 실질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함으로써(서울고등법원 1996. 12. 6. 선고 96나 2240 판결), 농축산업의 경우 다른 사업과는 달리 소비자 보호와 더불어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가격제한행위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우리 입법자나 법원은 농수산물 및 축산물 시장의 경우 시장기능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보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생산량과 가격 등 핵심적인 시장 경쟁요소를 관리하도록 하여 농수산업자 및 축산업자들과 국내 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해외의 경우

가. 미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 캐퍼-볼스테드법(Capper-

계육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점

Volstead Act) 7 U.S.C. § 291.에 의해 농수산물이나 축산물을 생산하는 자들이 일정한 단체(가령, 조합이나 법인)를 구성하여 공동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동법의 취지는 예측 불허의 날씨, 수요의 유동성, 생산품의 변질가능성과 같이 농업을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시장상황의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해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구매하는 자가 생산자에 비해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교섭력이 약한 농가나 축산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산자가 공동으로 마케팅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등을 도모하는데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법원은 농축산업자들의 가격고정(price-fixing)과 같은 공동행위에 대해 경쟁법의 적용을 면제해 왔다. 예를 들어 우유생산업자들의 조합들이 공동으로 법상 하한가격 이상으로 가격을 결정한 사안에서 법원은 '가격의 결정은 마케팅의 불가분의 한 요소'임을 근거로 이와 같은 조합들의 공동가격결정 행위는 캐퍼-볼스테드 법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로서 경쟁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동 판결로 인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던 생산자들이 구매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미국 우유시장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후생이 증진되게 되었다.

이처럼 캐퍼-볼스테드법의 명시적인 태도 및 이를 해석하는 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라

미국의 농축산업 생산자 조합은 약탈적 방법(predatory fashion)이나 경쟁을 제거(stifle competition)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한, 합법적으로 가격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시장의 불안 요소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회원들의 닭고기 생산량이 전국 생산량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계육협회(NCC : National Chicken Council)는 육계산업과 관련된 통계 및 정보공급을 위한 리서치, 회원사들에 대한 감사, 회원사 회의 개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시장 내의 가격과 수급에 관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여 닭고기 생산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나.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의 경우에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관련 생산자 협회에게 수급조절 및 가격규제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캐나다의 가금육협회(CPEPC: Canadian Poultry and Egg Processors Council)의 경우 회원들의 시장 점유율이 90%에 이르는데, 이러한 CPEPC는 생산 쿼터제를 통해 지역별 닭고기 공급량 및 시장 가격을 공식적으로 조절함으로써 닭고기 가격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여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닭고기 산업에 관한 제반 법령의 태도

1) 계열화 사업자에 관한 규정

최초 계열화 사업은 축산법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추진되었다. 즉, 축산법이 1984. 8. 2. 법률 제3738호로 개정되면서 동법에서는 가축의 계열화 생산이라는 표제 아래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농가소득증대와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축산업협동조합 제13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축산업자·기타 농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에 대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와 계약에 의한 생산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축산법이 1999. 1. 29. 법률 제5720호로 개정되면서 계열화 사업에 대한 위 근거 규정이 삭제된 이래 현재 계열화 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은 법률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계열화 사업은 “법률”의 근거가 없다고 하겠다.

2) 닭고기 유통에 관한 규정

닭고기의 유통과 관련하여 축산법은 “가축시장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관리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34조 제1항).

한편 농안법에 의하면 농림부 장관이나 해

양수산부 장관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데(제17조), 도매시장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농림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중앙도매시장(제2조 제3호)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관할구역 내에 개설하는 지방도매시장(제2조 제4호)으로 나뉜다.

한편 이러한 농수산물도매시장과는 별도로 지역농업협동조합·지역축산업협동조합 등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농수산물공판장(제43조)을 개설할 수 있고, 민간인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제47조)을 개설할 수 있다.

이러한 도매시장은 ① 거래의 중심 가격을 형성하는 기능, ② 수급을 조절하는 기능, ③ 생산농가에 대해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순기능을 수행한다.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위와 같은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상장되어 출하가격이 형성되고, 그 뒤에 단계별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위와 같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소비자 가격이 결정되고 있다. 축산물 중 쇠고기와 돼지고기 역시 축산물공판장과 같은 도매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비교적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닭고기의 경우에만 도매시장이 형성되어 있

계육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점

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수요·공급과는 무관하게 가격이 결정되고 있다.

3) 닭고기의 도축·위생 및 포장에 관한 규정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면 가축의 도살·처리,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동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하며(제7조), 이 때 농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위생관리기준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제8조, 제9조).

이와 관련하여 동법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도살·처리하는 가축과 작업장에서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닭 및 그 식육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그 소속 수의사 중에서 지정한 자체검사원의 검사로 이를 갈음할 수 있음.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

이처럼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은 작업장 밖으로 반출할 수 없고(제17조),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가축 또는 축산물은 소각 또는 매몰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한편 농림부 장관은 축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운반·진열 및 판매하게 할 수 있다(제10조의 2). 이러한 축산물 포장의무는 닭의 식육을 대상으로 하고, 연간 1일 평균 도축수가 8만수 이상인 자

에 한하여 적용된다(동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이러한 포장 의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제47조).

이처럼 닭고기의 경우 도축·위생 및 포장에 관해 엄격한 법적 규율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도축, 위생에 관한 단속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4) 가금수급안정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가금수급안정위원회는 축산법 제3조에 기해 농림부가 작성한 「농림사업시행지침」을 근거로 2001년에 설립되었다. 동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농림부·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가·학계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을 대표하는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설치된 수급안정위원회 사무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정부에 의한 구매 비축 사업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인 수급 조절 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적정한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동 위원회는 생산비보다 10% 낮게 형성된 닭고기 가격이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경우 계육 수매에 나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 불균형이 계속되면 병아리와 종계(노계)의 도태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농림부와 동 위원회는 수급 안정



사업의 기본 방향을 확정하고 동 위원회 사무국에 사업 추진 계획을 시달하며 사무국은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농가 등과 연계하여 실제 사업을 실시한다. 그 후 사업·농가 등이 사업 추진 상황과 결과를 사무국에 보고하면 사무국은 이를 취합하여 농림부와 동 위원회에 이를 다시 보고하는 절차를 밟는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농가 등에는 장려금이 지급되는 바, 이는 무이자로 대여받은 축산발전기금 중 일부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다.

동 위원회 운영준칙 제4조에 의하면 동 위원회는 위와 같이 생산 과잉 시 도태 등을 통한 사육수수의 자율적인 감축 조정·민간 차원의 수매 비축·수급조절사업에 관한 장려금 지급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본적인 성격이 민간의 자율수급조절기구에 불과하여 법률상으로는 사실상 가금수급안정위원회로 하여금 수매 사업을 강제하도록 할 의무가 없다는 데에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3. 현행 법령 및 제도의 문제점 및 보완책

1) 농축산물 산업 전반에 관한 문제점 및 보완책

가. 닭고기 산업의 보호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농안법, 축산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이

존재하고, 각 관련 법령은 농림부 장관 또는 산업 관련자들로 하여금 계약생산제도, 과잉생산시 생산자보호제도, 유통협약제도, 유통조절명령 제도 등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이는 각 사업자의 인지도 부족 및 위와 같은 제도의 미정착으로 인해 위 제도에 관한 농림부와 관련 사업자 간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또한 민간자율기구인 가금수급안정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으나, 가금수급안정위원회의 역할이나 활동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헌법, 농안법, 축산법 등이 농림부의 농수산물 시장에서의 생산자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금수급안정위원회에 닭고기 시장의 수급조절 업무를 모두 위탁할 것이 아니라 농림부가 주도적으로 계육산업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시장 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림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계열화 사업자 및 농가 등 닭고기 생산단계의 관련자들이 정부기관과 직접 협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통해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농안법 및 축산법 상 농림부 장관에게 행사권한이 있는 하한가격 예시제도, 닭고기 수매제도, 유통조절명령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계육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점

야 할 것이다.

나. 또한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농수산물의 생산자 보호를 위해 협회 차원에서 또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실효성 있는 닭고기 하한 가격을 결정하고 공동 마케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고, 이에 대해 농림부나 경쟁당국에서 이러한 행위의 합법성을 충분히 인정해주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또는 사업자 단체가 직접 닭고기 공급량 및 시장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농안법에는 생산업자, 유통업자, 소비자 등이 모두 협의하여 생산조절을 결정하도록 하는 유통협약 제도가 있으나 이 역시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농축산물의 경우 제품의 특성상 생산자의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생산자 및 관련 협회의 권한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협회 및 사업자가 공동행위를 실시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시장 가격 및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축산업의 생산자들이 산업 보호를 위해 일정한 경우 공동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입법화하고, 생산자들이 행할 수 있는 공동행위의 허용 범위에 관해 농림부와 경쟁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2) 닭고기 산업의 각 영역별 관련 규정 상 문 제점 및 보완책

가. 계열화 사업자 관련 규정

계육산업에서 계열화 사업자가 장기적으로 거래하는 농가의 비중이 증가되면 농가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고 투기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위생적이고 질 좋은 닭고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 사회전체의 후생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론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현재 축산법 상 계열화 사업자에 관한 규정이 폐지된 상태이므로 법령의 근거가 없는 계열화 사업자의 활동이나 이에 대한 지원은 법령상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을 조속히 신설하고, 그 근거 규정을 기초로 농림부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비계열화 농가의 계열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나. 닭고기 유통에 관한 규정

닭고기 제품의 특성상 도매시장 형성이 불가능하다면, 현행 농안법 상의 하한가격예시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닭고기 가격의 안정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농림부가 직접 하한가격예시 제도를 운영하기 어려울 경우 생산자의 사업



자 단체인 관련 협회에 위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림부 또는 사업자 단체가 닭고기의 가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가격변동의 이상 징후를 상호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다. 닭고기 도축·위생 및 포장에 관한 규정

현재 닭고기제품의 품질 및 위생 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근거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품질 및 위생 관리에 관한 단속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닭고기 품질 및 위생 관리에 관한 농림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 책정과 인력 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각 사업자들이 품질 및 위생관리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계열화 사업자의 닭고기 공급가격 결정구조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라. 가금수급안정위원회의 역할

가금수급안정위원회의 지원 및 활동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동 위원회가 사후적인 수급조절기능만을 수행할 것이 아니라 시장의 불안한 징후가 발발하고 각 산업 관련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적극적으로 수급조절기능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방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현행법령의 내용이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현 단계에서는 법령 개정 절차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입법화하는 것 보다는 먼저 기존의 농안법, 축산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상 규정되어 있는 축산업의 생산자 보호 관련 규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계육산업 관련자들의 제도개선에 관한 인식과 함께 계육산업에 대한 농림부의 역할 강화 및 농림부와 계육산업 관련 종사자들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농림부의 원활한 협조 및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계육산업의 각 분야별(농가, 계열화 사업자, 유통업자 등) 대표자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농림부와 상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농축산물 시장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나 협상력 차이로 인해 생산자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고, 그로 인해 생산자가 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외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농림부가 보유하고 있는 시장의 관리권한을 생산자측 사업자 단체(협회 등)에 위임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격과 물량을 조절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농림부는 이를 관리·감독하는 형태의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